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18 발의연월일: 2021. 2. 26.

발 의 자:황보승희·허은아·박성중

유경준 • 서범수 • 김예지

김영식 • 박대출 • 정희용

송석준 • 박대수 • 주호영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 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,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,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(안 제5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이사·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이사 · 집행기관의 보수
- 2. 이사 · 집행기관의 각종 수당 내역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5조의2(이사·집행기관의 보
	수 등의 공개) 이사회는 다음
	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
	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
	야 한다.
	1. 이사·집행기관의 보수
	2. 이사·집행기관의 각종 수당
	<u>내역</u>
	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사항</u>